고용노동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6. 2. 5.(목) 12:00 (2026.2.6.(금) 조간)

원장의 갑질! 폭언과 괴롭힘이 일상이었다 서울 유명 치과병원 특별근로감독으로 엄단

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는 지난 '26.2.2(월) 166개 사업장에 대한 「익명 제보 감독결과」 발표에 이어, **'26.2.5(목) 서울 강남의 유명 'ㅍ 치과병원'**에 대한 **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를 발표**하였다.

해당 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"**위약예정*** 금지(근로기준법 제20조)"에 대한 **감독 청원이 접수**('25.11.20)된 것을 계기로 감독을 실시 하던 중 **재직자로부터 병원장의 폭언·폭행, 직장내 괴롭힘의 행위가 심각**하다는 사실을 **제보받아 착수**하게 되었다.

* 퇴사 1개월 전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사 사실을 알려야 하고, 알리지 않을 경우 1일당 평균임금의 50%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강요

관할 관서인 **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**은 제보받은 즉시 제보자 대상 조사 후 **신속히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('25.11.24)**하여 **약 2달여간 현장감독을 실시**하였다.

■ **(주요 제보 내용)** *"새벽 1~2시에 퇴근하고, 하루종일 무전으로, 대면으로, 퇴근후엔 카톡으로 욕을 들어야 합니다.", "전날 밤 11시에 퇴근하면 일찍 퇴근해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몇 시간 벽을 보고 서 있으라 합니다.", "잘못을 한 게 있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깜지(반성문)를 쓰게 합니다."*

당사자 진술만으로는 밝히기 어려운 **폭언·폭행 및 괴롭힘과 임금체불 등의 범죄사실**을 입증하기 위해 신속하게 **압수수색·검증영장을 발부('25.11.27)** 받아, **압수수색을 실시('25.12.1)**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끝에 병원장의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밝혀 내게 되었다.

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▲근로기준법상 **폭행, 위약예정 금지, 근로·휴게 시간, 임금 체불**(연장·야간·휴일 수당 미지급) 등 **총 6건을 범죄인지(형사입건)**하고, ▲**직장 내 괴롭힘, 임금명세서 미교부** 등 **총 7건에 대해 과태료 1천8백만 원**을 부과 조치하였다.

☑ **주요 법 위반 사례**

① **폭행** 세미나실에서 노동자 1명을 세워두고 **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바닥, 벽, 출입문을 내려치는 등의 행위**를 하거나, 특진실에서 노동자의 **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가격**하는 장면 확인

② **위약 예정** 사직시 퇴사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신청하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일당 1일 평균임금의 50%의 **손해배상을 약정**하는 **근로계약 부속 확인서 작성 확인(89장)**

→ 실제 퇴사자 39명 대상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발송, 이 중 5명은 실제 손해배상액을 납입(669만원), 미 이행자 11명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소송 진행 중

③ **근로시간** 진료 종료 후 잦은 업무 지시 등으로 **총 106명, 813회 연장근로 한도 위반**

④ **임금체불** 연장근로 시 사업주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나, 승인 요청 시 질책·압박 등으로 사전 승인 없이 연장근로 실시, 이에 따른 수당 등은 미지급 **(총 264명, 3.2억 체불)**

⑤ **직장 내 괴롭힘**

· **(욕설·폭언)** SNS 단체대화방 및 업무용 무전기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'저능아 00야', '이 쓰레기들 진짜', '일처리 개00 진짜' 등의 욕설 및 폭언 다수

· **(벌세우기)** 업무중 사소한 실수에도 **직원들을 벽보고 서게 한 후 1~2시간 이상 질책**

· **(반성문 작성)** '환자 연락을 잘 받자', '데스크 무전을 잘하자', '수술 보고를 잘하자' 등의 내용을 반복해서 많게는 **20장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(총 513건)**

한편, 감독기간 동안 **근로감독관의 적극적 지도**를 통해 **재직자 및 퇴직자 264명에게 체불한 임금 3억 2천만 원**은 **전액 청산**하고, **퇴직자 11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철회**하였으며, 기존 **퇴직자 5명**에게 받은 손해 배상액(669만원)도 **즉시 돌려**주도록 **조치**하였다.

또한, **손해배상 내용증명**을 받은 **퇴직자 전원**에게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서 직접 **감독 결과와 함께 동 내용증명은 무효**라는 사실을 **별도 안내**하였다.

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"**행복**하게 **일해**야 될 **일터**에서 지속적인 **폭행과 괴롭힘**을 **감내**하면서 **견뎌온 노동자**들을 **생각**하면 **가슴**이 **아프다.**"라면서, **"앞으로, 현장**의 **작은 목소리**도 놓치지 않는 **감독을 통해 폭행과 괴롭힘** 등에 대해서는 **무관용**의 **원칙**으로 **예외 없이 엄단**하고, 특히 **공정한 출발**을 저해하는 **위약예정**은 **근로계약 당시부터 노동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례** 중심으로 적극적인 **교육·홍보활동**도 **병행**해 나가겠다.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김태연 (044-202-7553)
		담당자	사 무 관	박종길 (044-202-7528)
			주 무 관	오성곤 (044-202-7531)
담당 부서	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노동기준감독과	책임자	과 장	손광진 (02-3465-8420)
		담당자	근로감독관	장상훈 (02-3465-847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